기 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㉑ - 자작리 고인돌

북방식 지석묘, 옛조상들의 중후한 생활풍습 엿보여

최 종 규
포천명유회 회장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2호
소재지: 포천시 신읍동 자작리 251-2
규모: 지석현고 75cm, 蓋石 4.4m×4.3m

포천시 신읍동 자작리 251의 2에 있으며 북방식 지석묘로 석기시대 옛 조상들의 문화를 고인돌로 미루어 보아 얼마나 생활풍습이 중후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다. 대개 고인돌은 자작리에서 나온 석질이 아니라 어디에서인가 운반해 왔다는 데 더욱 그 뜻이 있겠다 하겠다.

자작리 부락 민가 옆에 남아 있으며 구성양식은 평지에 조성된 탁자형의 소위 북방식 지석묘로서 하부가 약간 매몰되고 단변지석 1석이 없어졌을 뿐 다른 부재는 모두 남아 있어서 원형을 살피는데는 지장이 없다.

장변지석을 세우고 그 좌우를 막고 석실을 이루어 개석을 덮었었는데 그 막음돌 한쪽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모두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는데 개석은 두께가 거의 일정하여 마치 치석한 판석처럼 보인다. 내부의 유물은 모두 도굴 당하였으므로 어떤 유물이 었는지 알 수가 없다.

대개의 북방식 지석묘에는 단변지석이 없는데 이곳의 지석묘에는 한쪽 만이라고 남아 있어서 원형을 짐작하는데 지장이 없다. 각부의 실측치는 장변지석 고 75cm, 장 230cm, 후 35cm, 개석규모 440×430cm, 후 44cm이다.

자·유·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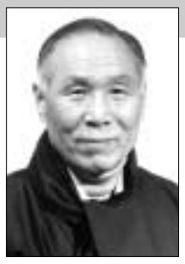

이 규 임
동아방송대학 교수 · 포천 가산면 출생

뿌리를 모르면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하지 못하면 지킬 수 없다

"뿌리를 모르면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하지 못하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내 평소의 생각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글로벌(global)] 시대에 살고 있다. 글로벌 시대란 WTO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WTO시대란 빗장을 열어놓고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WTO시대 이전에는 빗장을 걸어놓고 살았었다. 빗장을 걸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탐장 안에서는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빗장을 열어놓고 살아야 하는 WTO시대가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빗장을 열어놓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탐장 안에 들어와 우리와 같이 경쟁하게 되었다.

흔히들 "가장 로컬(local)한 것이 가장 글로벌(global)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이란 말이다. 이 말은 가장 지역적 특성을 잘 지니고 있는 것이 국제무대에서도 통한다는 말이다. 지역적 특성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이다. 국제무대의 특성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일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던지 일등이어야 하고 최첨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가장 '로컬'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세계와 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고유하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지닌 그 무엇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유엔이 정한 세계문화 유산을 여럿 가지고 있다. 한글이 그렇고 조선왕조실록이 그렇고 팔만대장경이 그렇고 강릉단오제가 그렇다.

한글이 왜 우수한가? 세계 어느 나라 말이던지 표기할 수 있고 가장 적은 타수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 한글만큼 어떠한 말이던지 표기할 수 있고 가장 적은 타수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 가장 적은 타수로 소통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 특히 휴대전화가 세계를 풍미하고 업지문화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IT문화 현장에서 한글을 당할 문자는 없다. 세종대왕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글을 세계에 널리 보급해야 하는 이유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왜 소중한가? 세계 역사상 한 왕조가 500년을 지탱한 나라도 없으려니와 그 500년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한 역사를 가진 나라도 없다.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보루요 자산이다. 역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자 스승이다. 그 속에 선조들의 지혜와 삶과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고 이념과 사상과 통치철학이 그대로 담겨있다. 역사를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이다.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다.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팔만대장경은 왜 귀중한가? 세계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장경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경전이기 때문이다. '각(覺)'의 세계를 열어주는 경문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 우주와 철학이 있고 그 속에 종교와 신앙이 있다. 장경은 믿으라 하지 않는다. 따르라 하지 않는다. 스스로 깨우치라 한다. 스스로 부처가 되라 한다. 대중이 받드는 이유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이다.

강릉단오제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빛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남도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주장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바람에 김치를 뺏길 번 했다. 단오제도 뺏길번 했다. 주장했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었고 주장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다. 김치를 지키고 단오를 지켰다고 안심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고구려와 독도가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겼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뿌리를 모르는데 주장할 수 있는가? 나를 모르는데 주장할 수 있는가? 뿌리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뿌리를 알고 나를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다. 뿌리를 모르고 나를 모르니 역사를 뺏어가도 어쩌지 못하고 땅을 뺏어가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역사를 배우지 않고 역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황국사관에 주눅 들고 식민사관에 치이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역사를 1세기 동안 뜯어고쳤고 일본은 우리의 역사를 36년 동안 뜯어고쳤다. 우리의 좋은 것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었고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시켰다. 그러한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동북공정이 그렇고 영유권 분쟁이 그렇다. 왜 고구려가 그들의 것인가? 왜 독도가 그들의 것인가?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

시어간(始於艮) 종어간(終於艮)이라 했다. 시작도 간방에서 마침도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간방(艮方)]은 우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의 땅이다. 유문사 이래 간방이 우리 땅이라는 것은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 백두산 천지에서 백록담 천지에 콤파스를 대고 그어보아라. 그 범위가 바로 저들이 인정하는 간방이다. 이 땅에서 문화가 싹트고 이 땅에서 문화가 전파된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가?

저들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고 있다. 2주갑 인상이 바로 그것이고 동북아문화권 시비가 바로 그것이다. 황하문화권과 동북아문화권은 엄연히 다르다. 그것은 발굴유물로도 증명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동북아 문화권마저 저들의 것이라는 것이다. 동북아 문화권을 인정하면 저들의 주장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900여회의 외침을 받았다고 한다. 단 한번도 외국을 침범한 일이 없다고 한다. 오죽 힘이 없으면 그랬겠느냐는 식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힘이 없어서 외국을 침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못나서 외국을 침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가르침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홍익인간이란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다 함께 잘 살자'는 것이다. 다 함께 잘 살자는데 싸움이 있을 수 없다. 다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외국을 쳐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못나서가 아니다. 가르침 때문이다. 홍익인간이란 가르침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가 말해준다. 당나라와의 싸움을 보라. 수나라와의 싸움을 보라. 어떠했는가? 수양제가 어떻게 물러갔는가? 당태종이 어떻게 퇴각했는가? 스스로 외침은 하지 않았으나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는 단호히 이를 물리쳤다. 이것이 우리의 추상같은 기상이요 전통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드높여야 하다. 우리 스스로 우리 선조들의 이 같은 정신을 선양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그 가르침을 떠받들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이 이상 훌륭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종교백화점'이라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종교가 다양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싸우지 않는다. 가르침 때문이다. '홍익인간'이란 가르침 때문이다. '다 함께 잘 살자'는 가르침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후대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관통할 수 있는 더 좋은 가르침이 이 이상 어디 있는가? 글로벌 시대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이러한 가르침이 또 어디 있는가? 어디 그 뿐인가? 개천시대에 단군께서는 '삼교지도(三敎之道)'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가라고 가르치셨다. '삼교'? 삼교란 무엇인가? 삼교란 '지감(止感)'과 '조식(調息)'과 '금촉(禁觸)'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지감과 조식과 금촉이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감(止感)'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조식(調息)'이란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금촉(禁觸)'이란 나와 상대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감과 조식과 금촉이 한데 어우러져야 도(道)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도(道)'는 버리고 '교(敎)'만 가지고 다투고 있다. '교'는 이처럼 상호보완적인 것이지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삼교'가 모였을 때 비로소 '도'를 이루기 때문이다. '교'만 보아서는 안 된다. '도'를 보아야 한다. '도'를 버리고 '교'만 보기 때문에 다툼이 일고 시비가 이는 것이다. '교'를 초월하여 '도'를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도'의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도(道)'라 했는데 도란 또 무엇인가? 도란 '길'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면 '길'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자연(自然)'이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이 가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도'란 자연을 다스리는 '섭리(攝理)'와 그 '이치(理致)'를 말하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를 '철학적(哲學的)'인 용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도'란 말이다. 도는 곧 '자연'의 다른 이름이요 '자연' 그 자체이다.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 해서 자연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니다. 자연 속에 한데 어울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처럼 인간도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를 말했던 것이고 '삼교'를 말했던 것이다.

마음과 몸과 '행(行)'을 함께 다스려야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 수 있었기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맘과 몸과 행의 조화점(調和點)을 찾으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그 삼자간에 '균형(均衡)'을 이루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균형과 조화라는 잣대'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이 가르침이 바로 삼교지도의 가르침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는 또 천부경(天符經)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다. 천부경이란 무엇인가? 천부경이란 81자로 이루어진 경전이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로 시작해서 일종무종일(一終無 終一)로 끝나는 경전이다. 81자 속에 '우주 본체의 이치'와 인간 심성의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경전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경전이다. 이러한 경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성경과 불경과 사서삼경만이 경전이 아니다.

성경과 불경과 사서삼경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 불론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고 불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사서삼경은 공자님 말씀이라는 것쯤은 안다. 그러나 경(經)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경'은 계시를 받아서 쓴 글이다. 계시를 받아서 쓴 것만이 '경'이다. 그 외의 것은 '경'이 아니다. '경'은 이처럼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경'은 절대자의 말이다. 이러한 고유의 '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천부경'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이러한 전통을 지켜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뿌리를 모르면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하지 못하면 지킬 수 없다." 이것이 신년 새해에 필자가 던지는 화두(話頭)다.

특별기획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㉔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자들의 반대근거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소추권과 심판권이 동시에 법관에게 있던 규문주의적 형사절차를 폐지하고, 탄핵주의적 형사절차에로의 근본적인 개혁의 결정적인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검사제도이다. 즉 19세기 중엽 증거수집 등 수사절차와 공소제기를 위해서 검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탄핵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에게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탄핵주의 구조하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일방의 당사자인 검사에게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즉 장래에 있어서 피의자·검사·법관의 삼면관계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검사가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에게 주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업무는 행정행위로서 행정경찰행위만이 실질적인 경찰의 개념이고, 범죄수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경찰공무원법상 경찰의 직무에 범죄수사를 포함시킨 것은 경찰에게 사법조사의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즉, 경찰작용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현상유지 또는 예방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범죄수사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침해이므로 이를 경찰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과 비교하여 공소재기와 그 유지를 거쳐 재판의 집행에 이르는 형사절차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도 역시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이른바 준사법기관으로 볼 수가 있다. 즉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법업무인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의 본질은 단순하게 국가공권력의 행사라는 실력작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 적용, 범죄행위의 법률적 구성 등 법률적 평가작용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갖춘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법률적 감시·지도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수사가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관여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에 적합한 수사 전개나 필요한 증거수집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단이 어렵게 되고 국가형벌권의 약화로 종국적으로는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고, 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지능범죄나 신종범죄에 대처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추관인 검사가 국가형벌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고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가 되는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는 국가형벌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의 1단계로서 공소제기의 준비행위이다. 그리고 우리의 형사소송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의 여부가 결정된다. 즉 수사의 결과는 공소실행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법경찰관리로부터 검사에게 발전적인 흐름을 하게 되고, 검사는 이를 취사·정리·보충하여 법률적으로 재조립한 후 공소단계에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능률적이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공소권을 동시에 검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사는 경찰에, 공소는 검찰에 부여하자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지휘는 수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고, 사리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할 수 있게 사전에 조정이 가능해 수사와 공소의 통일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만일 수사와 소추가 분리되어 실행하게 된다면 채증시기를 일실하게 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등 경찰의 적정치 못한 수사관행을 방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초기부터 검사가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수사권이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사법경찰관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에 대한 저항감을 야기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독립론자들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을 들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도 경찰의 임무로서 '범죄의 진압 및 수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도 '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있음은 현행법상 명백하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법규정의 문리해석상으로도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사법경찰관에게는 수사권과 사법경찰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으며 단지 검사의 지휘권이 우월하게 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자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권의 존부와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휘를 받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하에서 검사가 범죄수사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이것은 형사정책적 차원이나 법률적 차원이지 범죄수사개시에 대한 인허가가 아니다.

〈다음호에 계속〉

포천신문 창간 1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일번지 암소이동갈비가 새로운 메뉴를 선보입니다"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신메뉴 출시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전문
동태탕
동태찜

2층 풍천민물장어 · 동태탕 · 동태찜

250석 보유, 연말연시 예약중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 애 화
031)542-1887~8